

『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태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 의원의 다양한 의정 및 시정 분야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간 가능 등록 수를 확대하여 정책의 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원연구단체의 연간 등록 수 확대 : 3개 이내 → 4개 이내
(안 제7조제2항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간 가능 등록 수를 확대하여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됨이 없고, 구미시 의회 의원 연구 역량을 폭넓힐 수 있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5. 참고사항

○ 도내 및 유사 규모 타 시군 조례 현황

구 분	연구단체 인원	중복 가입	단체 수 제한	활동 지원비	활동기간	비 고
경북도	10명 이상	부	제한 ×	예산 내	10월 말까지 신청 ~ 10월 말 (특별한 사정있는 경우 다르게 가능)	
포항시	5명 이상	여(2개)	제한 ×	예산 내 300만원 이내	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	
경주시	2명 이상	여(2개)	제한 ×	연구용역	연구활동 계획 승인 통지일로부터 1년 범위	
안동시	5명 이상	여(2개)	제한 ×	1개 예산 내 500만원 이내	활동기간 규정 ×	
구미시	5명 이상	여(2개)	3개	예산 내 300만원 이내	통지일부터 10월31일까지	
영주시	3명 이상	여(2개)	제한 ×	예산 내	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	
김해시	5명 이상	여(2개)	제한 ×	예산 내	활동기간 규정 ×	
진주시	5명 이상	여(2개)	제한 ×	1개 예산 내 500만원 이내	통지일부터 11월30일까지	
화성시	5명 이상	여(2개)	제한 ×	의정운영공통 경비 10% 내	2월말까지 신청 ~ 12월말까지	
파주시	4명 이상	여(2개)	제한 ×	의정운영공통 경비 5% 내	11월말까지 신청~ 11월말	